

## 외교부 공업서기보(공업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공업서기보(공업직 9급, 1명)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외 교 부 장 관

###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 및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1명	· 도시가스·에너지(보일러) 관리 · 장관 공관 시설유지 관리 · 기타 일반 행정 업무	외교부 장관 공관 (서울 용산구)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3. 응시자격요건

【 응시요건 : 가~마 전부 충족 필요 】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㉕ 18세 이상인 자(01.12.31. 이전 출생자)

㉖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㉗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필요)

㉘ 에너지관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사업자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열관리, 보일러 취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하며,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열관리, 보일러 등)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며, 서류전형에만 적용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관련 분야 근무 경력) 응시요건 충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사업자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열관리, 보일러 취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최대 5년까지 경력별 차등 배점

-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 /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 증명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써 추가 증빙 필요
- 경력(재직)증명서는 19.3.6. 이후 발행분(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만 인정
- 비상근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 (직무 관련 상위 자격증) 응시요건 충족 이후 직무 관련 상위 자격증(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복수의 자격증 보유시 최상위 1개만 인정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배점

○ (기타 관련 자격증) 종류 무관, 최대 4개 인정

- (기 술 사) 가스, 소방,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공조냉동기계
- (기 능 장) 가스, 전기
- (기 사) 가스, 소방설비, 전기, 전기공사, 공조냉동기계
- (산업기사) 가스, 소방설비, 전기, 공조냉동기계
- (기 능 사) 가스, 전기, 공조냉동기계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종류 무관, 최대 3개 인정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1·2급

○ (가스안전관리자격증) 종류 무관, 1개 인정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 **우대요건 관련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함.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응시요건의 조건이 충족되면 응시 가능)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19.9.18)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4.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문상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 실시, 선발인원의 1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의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19.9.5(목)	19.9.16(월)~18(수)	19.10.4(금)	19.10.11(금)	19.11.1(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예정

##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외교부) [www.mofa.go.kr](http://www.mofa.go.kr) / (나라일터) [www.gojobs.go.kr](http://www.gojobs.go.kr)

- 접수기간 : [2019.9.16\(월\)~18\(수\),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

- 방문접수는 출입·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외교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연락(☎02-2100-7146)
- 마감일인 [9.18\(수\)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우편·방문접수 동일\)](#)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분할 / 중복접수는 불가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외교부)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접수처 : (03172)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인사운영팀

※ 응시원서 겹봉에 ['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요망

## 7. 제출 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별지1호)

※ [응시수수료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구입)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필요)

② 이력서(별지2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력서 상의 자격·경력 등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요](#)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응시요건 자격증(사본 1부)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응시자는 경력(재직)증명서도 반드시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5호)

※ ①~⑤항목에 모두 동의여부 표시 후 하단의 날짜, 성명, 자필서명

⑦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6호) ※ 하단의 날짜, 성명, 자필서명

⑧ 주민등록초본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 분야 근무 경력 확인서 :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재직) 증명서로, 19.3.6 이후 발행분

-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사업자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열관리, 보일러 취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
- 근무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기재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 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요망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 필요
- 증명서에 발급 확인자 연락처가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필요)
- 비상근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산정

○ 자격증(반드시 사본)

직무 관련 상위 자격증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기타 관련 자격증	(기술사) 가스, 소방,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공조냉동기계 (기능장) 가스, 전기 (기사) 가스, 소방설비, 전기, 전기공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가스, 소방설비, 전기,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가스, 전기, 공조냉동기계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 활용1·2급
가스안전관리 자격증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

##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8호)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ment@mofa.go.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19.11.4(월)~29(금)
- 보수 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내용은 외교부 인사운영팀(☎02-2100-7146)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직무기술서 및 별지1~8호

<b>붙임</b>	<b>직무기술서</b>
-----------	--------------

<b>주요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스 · 에너지(보일러) 관리</li> <li>· 장관 공관 시설유지 관리</li> <li>· 기타 일반 행정 업무</li> </ul>
-------------	--

<b>필요역량</b>	<p>(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p> <p>(직급별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p>
-------------	--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 · 난방 설비 등 시설 관리</li> <li>· 일반사무 보조 등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li> </ul>
-------------	--

<b>응시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에너지관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자격증 소지자</b></li> <li>· <b>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열관리, 보일러 취급) 근무 경력자</b></li> </ul>
-------------	---

<b>우대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까지 경력별 차등 배점)</li> <li>· 응시요건 충족 이후 직무 관련 상위 자격증* (복수의 자격증 보유시 최상위 1개만 인정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li> </ul> </li> <li>· 기타 관련 자격증(종류 무관, 최대 4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술 사) 가스, 소방,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공조냉동기계</li> <li>- (기 능 장) 가스, 전기</li> <li>- (기 사) 가스, 소방설비, 전기, 전기공사, 공조냉동기계</li> <li>- (산업기사) 가스, 소방설비, 전기, 공조냉동기계</li> <li>- (기 능 사) 가스, 전기, 공조냉동기계</li> </ul> </li> <li>·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종류 무관, 최대 3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1·2급</li> </ul> </li> <li>· 가스안전관리자자격증(종류 무관, 1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시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li> </ul> </li> </ul>
-------------	---